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31호 2010. 12. 1. (수)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0-659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
- 정선군공고 제2010-665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2
- 정선군공고 제2010-675호 2011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6
- 정선군공고 제2010-676호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8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공고 제2010-659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75조3항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0. 11. 18.

정 선 군 수

1. 위반사항 및 공시송달 내역

-공고기간 : 2010. 11. 22 ~ 2010. 12. 07(16일간)

1.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사항 공고					
2.당 사 자	성 명 [명칭]	박춘희 100가지이야기야식				
	주 소	정선군 남면 무릉리 611-71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계속휴업					
4.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소 폐쇄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식품위생법 제75조3항 적용					
6.청 문 실 시	기관명	정선군	부서명	보건소	담당자	최종범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80-5			전화번호	560-2747
	일 시	2010년 12월 07일 16:00 까지				
	장 소	정선군청 청문실				
	주제자	소속 및 직위	기획감사실, 지방행정주사			
	성 명	전 증 표				

2.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청문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우리 군이 하고자 하는 행정처분을 시행할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정선군보건소 위생부서 (033-560-27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0-665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1. 19.

정 선 군 수

1. 제정취지

정선읍 북실리 병방산 일원 및 광하리 모평 일원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군립공원 위원회 설치(안 제3조)
- 나. 군립공원의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다. 운영관리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우편번호 233-804)
 - F A X 제출 : 033-560-2056
 - 문의전화 : 033-560-2330

붙임 :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관리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군립공원위원회

제3조(설치)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 중 기획감사실장, 녹색환경과장, 관광문화과장, 농업축산과장, 산림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 2. 군립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 하는 자
-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특별위원은 그 군립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 및 제4조제4항제1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과 제4조제4항제2호·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또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 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입장료 등

제12조(입장료 등) 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위탁관리) ①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공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위탁운영의 해제·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4. 공원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5.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10-675호

2011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25.

정 선 군 수

1. 보조단체의 범위

- 가.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나.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라. 정선군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보조사업의 범위

- 가. 보조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 군정 주요시책 추진사업
 - 각종 군민의식개혁(계몽운동) 추진사업
 - 문화·예술·체육관련 행사
 - 기타 정선군수가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사업 및 단체의 범위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 같은 사업으로 국비 또는 도비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 기타 군수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단체

3. 지원 범위

- 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나. 자본적 경비는 지원 제외

4. 지원금액 : 금460,898,000원(금사억육천팔십구만팔천천원)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11. 25. ~ 2010. 12. 9.

➔ 사업별 해당부서로 접수

나. 제출서류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6. 심사 및 결과통보

가.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 선정기준 : 사업의 효과성 · 독창성 · 지역사회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심사하여 선정

나. 결과통보 : 정선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및 사업소관부서에서 단체별 통지

7.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가. 보조금 지급 : 심사결과 지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교부 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등을 선정된 사업의 소관부서에 제출 후 교부결정

나. 정 산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나.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함.

다. 관련사항은 정선군 기획감사실(☎ 560-2220) 또는 사업소관부서로 문의하시거나,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jeongseon.go.kr>) “공고/고시”에 게재된 『2011 정선군 사회단체보조금관리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0-676호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1. 29.

정 선 군 수

1. 제정취지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정선군 주요 시가지의 불법 주정차 차량, 무단방치 차량 등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이를 해소하고 차량견인 및 소요비용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차량의 견인(안 제2조)
- 나. 소요비용(안 제3조)
- 다.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우편번호 233-804)
 - F A X 제출 : 033-560-2174
 - 문의전화 : 033-560-2512

붙임 :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정차위반차량 등(사고차량, 고장차량, 방치차량 등을 포함한다)을 직접 이동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비용의 징수업무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의 대행법인 등이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대행법인 등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소요비용 중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1~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구 분 대상차량	견인료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1km마다)	비 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20,000원	1,000원	
중형승합 및 2.5톤 이상 6.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0원	1,500원	
대형승합 및 6.5톤 이상 화물자동차	40,000원	2,500원	

2. 보관료

가.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 산정은 견인사무소 차량입고 시간부터 최초 1시간까지 보관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한다.

나. 보관료는 1일 12,000원(시간당 500원)으로 하되, 1회 최대보관료는 3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요비용납부고지서				납 부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소			납 부 의무자	주소			납 부 의무자	주소		
	성명				성명				성명		
견 인	일시			견 인	일시			견 인	일시		
	장소				장소				장소		
소요비용 내역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 내역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 내역	견인료		보관료
	원		원		원	원	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			납부금액	원			납부금액	원		
부과근거 :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년 월 일 정 선 군 수				부과근거 :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정선군수 귀하				부과근거 :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